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59

발의연월일: 2020. 7. 31.

발 의 자:김정호·박재호·윤후덕

서동용・허종식・김경협

임종성 · 강병원 · 신현영

심상정 · 정성호 · 용혜인

김병욱 · 전재수 · 신정훈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용근로자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용을 상반기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, 하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하고 있음.

그러나 하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를 1월 말일까지,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 까지,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제출의 성격이 강하고,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따라서 상반기에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

는 현행처럼 제출하되, 하반기에 지급한 내용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단일화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함(안 제164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반기의"를 "상반기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4조의3(근로소득간이지급명	제164조의3(근로소득간이지급명
세서의 제출) ① 제2조에 따라	세서의 제출) ①
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	
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	
지급하는 자(법인, 제127조제5	
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	
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	
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	
에 따른 납세조합, 제7조 또는	
「법인세법」 제9조에 따라 원	
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	
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	
는 자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	
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	
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)	
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	
를 그 지급일(제135조 또는 제	
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	
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	
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. 이하	
이 항에서 같다)이 속하는 <u>반</u>	<u>상반기의</u> -

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(휴업,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,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)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,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② ~ ⑤ (생 략)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